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나2267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나2267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307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에이치

담당변호사 김철웅

변론 종결 2022. 11. 22.

판결 선고 2022. 12. 2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30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B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다).

이 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B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그 돈을 무상으로 귀속할 의사로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현찬

판사오성우

판사박이규